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관
의
장

제1693호 2022. 9. 5.(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1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47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월촌어린이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 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54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58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6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82호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 5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97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최초):다락방지구 소공원, 시천1지구 소공원】결정 입안을 위한 열람 공고 ——— 6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01호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안) ————— 66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11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9.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95번안길 11 외 1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9.5.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2-9-5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30-5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95번안길 11 (당하동)	20081231	고산후로95번의 안쪽으로 분기된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192-2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532번길 32 (금곡동)	20090710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3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0	인천광역시 서구 경중로11번안길 3 (경서동)	20201123	경중로11번길에서 분기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대로 384 (원당동)	20200420	신도시와 구도심, 환경과 사람의 이음에서 착안.	서영아너시티플러스 (검단신도시 C12-1-2)
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36-13	인천광역시 서구 담지로86번길 16-49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6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04-9	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466번길 75 (청라동)	20190429	파랑로 시작지점에서 4,660m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777, 223-778, 223-779	인천광역시 서구 길주로44번길 25 (석남동)	20090710	길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주)덕산 공장
8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0	인천광역시 서구 바리미로 17 (원당동)	20200720	"바리미"라는 옛 지명에서 착안	(검단신도시 주12)
9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745-3	인천광역시 서구 소담로58번길 8 (금곡동)	20200720	소담로 시점에서 580미터 지점에서 분기한 도로	금강에푸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2-9-5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사범로32번길 34 (경서동)	건축과-30870(2022.7.25.)호에 의거	20090922	사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B동
2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177 (백석동)	건축과-28653(2022.7.13)호에 의거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검단고강파크
3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680 (가좌동)	건축과-35272 (2022. 8. 25.)호에 의거	20090710	인천에서 육교를 쳐르고 부두에서 노역을 한 바 있었던 임시장부 주석 길구의 호를 따 명명	코오롱인더스트리(주)
4	인천광역시 서구 윗우물로14번길 3-1 (석남동)	건축과-35141(2022. 8. 24.)호에 의거	20090922	윗우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547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월촌어린이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연희3지구 제3호공원(월촌어린이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2. 9.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원개요

- 공원명 : 월촌공원(연희3지구 제3호공원)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98번지
- 면 적 : 2,001m²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 서구청 공원녹지과 (☎032-560-4803)

3.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도서 : 게재 생략

(시설결정 조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

도시관리계획(월촌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표(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98번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부지면적 (㎡)	시 설 면 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동수 (동)	바 닥 면 적 (㎡)	연 면 적 (㎡)				동수 (동)	바 닥 면 적 (㎡)	연 면 적 (㎡)				
계	2,000.0	1,064.82	-	-	-	48	2,001.7	1,033.0	-	-	-	37	부지면적 증)1.7㎡ 감)31.82㎡ 공작물감)11기		
공 원 시 설	시 설 계	1,064.82	1,064.82	-	-	-	48	1,033.0	1,033.0	-	-	-	37	감)31.82㎡	
	기 반 시 설	소계	398.0	398.0	-	-	-	-	398.0	398.0	-	-	-	-	
		도로	66.0	66.0	-	-	-	-	114.0	114.0	-	-	-	-	증)48㎡
		광장	332.0	332.0	-	-	-	-	284.0	284.0	-	-	-	-	감)48.0㎡
		조경시설	-	-	-	-	-	-	-	-	-	-	-	1	공작물증)1기
	휴양시설	-	-	-	-	-	21	-	-	-	-	-	15	공작물감)6기	
	유희시설	292.82	292.82	-	-	-	3	271.0	271.0	-	-	-	2	감)21.82㎡ 공작물감)1기	
	운동시설	366.0	366.0	-	-	-	-	364.0	364.0	-	-	-	8	감)2.0㎡ 공작물증)8기	
	교양시설	-	-	-	-	-	-	-	-	-	-	-	-		
	편익시설	-	-	-	-	-	-	-	-	-	-	-	-		
	관리시설	8.0	8.0	1동	8.0	8.0	24	-	-	-	-	-	11	감)8.0㎡ 공작물감)13기	
	도시농업시설	-	-	-	-	-	-	-	-	-	-	-	-		
	녹지 / 기타	935.18	-	-	-	-	-	968.7	-	-	-	-	-	증)33.52㎡	
시설율(% (법정60%이하)	· 시설율 : 53.20% · 녹지율 : 46.80%						· 시설율 : 51.60% · 녹지율 : 48.40%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554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9.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안(개정)이유

-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국장으로 정비하여 신속한 업무추진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 간사, 서기를 변경(안 제5조의2 일부개정)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기업지원일자리과, 전화 032)560-4442, 팩스 560-27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및 우편 제출 시 수신 여부 확인 바람)

※ 우편 발송 의견 제출처

[주 소]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활성화팀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개정)이유

-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국장으로 정비하여 신속한 업무추진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 간사, 서기를 변경 (안 제5조의2 일부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 1)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구청장”을 “중소기업 육성기금업무 담당 국장”으로, “경제교통국장”을 “중소기업 육성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간사와 서기 각”을 “간사”로, “기업지원일자리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를 “중소기업 육성기금업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p> <p>①·② (생략)</p> <p>③ 위원장은 <u>부구청장</u>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u>경제교통국장</u>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구청장</u>이 위촉한다.</p> <p>1. ~ 4. (생략)</p> <p>④·⑤ (생략)</p> <p>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간사와 서기</u>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u>기업지원일자리과장</u>으로 하고 서기는 <u>기금업무</u> 담당으로 한다.</p>	<p>제5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중소기업 육성기금업무 담당 국장</u>----- ----- <u>중소기업 육성기금업무 담당 과장</u>----- <u>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u></p> <p>1. ~ 4. (현행과 같음)</p> <p>④·⑤ (현행과 같음)</p> <p>⑥ ----- --- <u>간사</u> ----- ----- <u>중소기업 육성기금업무</u> ----- ----- --</p>

의견제출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약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558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9.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안(개정)이유

-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국장으로 정비하여 신속한 업무추진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중소기업활동 촉진 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 간사, 서기를 변경(안 제8조의2 일부개정)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기업지원일자리과, 전화 032)560-4442, 팩스 560-27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및 우편 제출 시 수신 여부 확인 바람)

※ 우편 발송 의견 제출처

[주 소]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활성화팀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개정)이유

-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국장으로 정비하여 신속한 업무추진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중소기업활동 촉진 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 간사, 서기를 변경(안 제8조의2 일부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예정

라. 기 타

- 1)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3항 중 “부구청장”을 “중소기업활동 촉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경제교통국장”을 “중소기업활동 촉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의2 제6항 중 “간사와 서기 각”을 “간사”로, “기업지원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업활성화”를 “중소기업활동 촉진 업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의2(운영위원회 구성) ① ~ ② (생략)</p> <p>③ 위원장은 <u>부구청장</u>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u>경제교통국장</u>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p> <p>1. ~ 2. (생략)</p> <p>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간사와 서기</u>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u>기업지원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업활성화 담당으로 한다.</u></p>	<p>제8조의2(운영위원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u>중소기업활동 촉진 업무담당 국장</u>----- <u>중소기업활동 촉진 업무담당 과장</u>----- -----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⑥ ----- ----- <u>간사</u> ----- -----<u>중소기업활동 촉진 업무</u>----- -----.</p>

의견제출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약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56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9.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법률 제18086호, 2021. 4. 20. 공포, 2022.4. 21. 시행)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061호, 2022. 4. 20. 공포, 2022. 4. 21. 시행)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행정 및 일반재산의 수익계약 허가대상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
-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규정 신설
-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법률 규정 수정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기준 마련
- 2021. 4. 21. 개정된 법률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변경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시 수익계약이 가능한 사유를 추가함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시 평가기준 마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적용하는 사용료 감면요율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적용하는 대부료 등의 감면요율 신설 등
-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신설

3. 의견제출

- . 제출기일 : 2022년 9월 26일까지
- .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 제출할곳 :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별관 2층 재무과
 - 전 화 : ☎ (032)560-4167, FAX (032)560-2720
 - * 의견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법률 제18086호, 2021. 4. 20. 공포, 2022. 4. 21. 시행)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061호, 2022. 4. 20. 공포, 2022. 4. 21. 시행)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행정 및 일반재산의 수익계약 허가대상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안 제3조 및 안 제6조)
- 나.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규정 신설(안 제8조제1항)
- 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법률 규정 수정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기준 마련(안 제13조)
- 라. 2021. 4. 21. 개정된 법률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변경(안 제20조, 안 제21조, 안제 21조의2, 안 제22조, 안 제23조, 안 제32조, 안 제33조, 안 제34조 및 안 제35조)
- 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시 수익계약이 가능한 사유를 추가함(안 제21조의2)
- 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시 평가기준 마련(안 제23조의2)
- 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적용하는 사용료 감면요율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적용하는 대부료 등의 감면요율 신설 등(안 제33조제2항, 제3항, 제4항)
- 아. 수익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신설(안 제34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협의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7조의2”를 “제10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대장가액”을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으로 한다.

5. 제23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10억원 이상

2. 공유재산의 다음 각 목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 면적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제20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2(수익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익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구청장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 가.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국제기구
 -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3.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구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 사용허가하는 경우

제22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수행 실적 및 관리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전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조”를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29조제4항제2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7호”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5

항”으로 한다.

제32조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9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을 “제13조의2제3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③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구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다만,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영 제29조 제1항제20호, 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21조의2제1호에 따라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해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
유재산의 대부료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4조의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세금 납
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
· 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반환절차는 구 재무회계 규칙”을 “반환
절차는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
·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하
여 인천광역시 또는 서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생산시설

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② 영 제29조제1항제28호의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공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5조 중 “영 제34조”를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로,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대부료”로 한다.

제39조의2를 삭제한다.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기업을 서구로 이전하거나 설립하도록 유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6항에 의한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경우

제50조제1호 중 “관사 : 부구청장”을 “관사 : 구청장”으로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변상금 징수의 유예) ① 영 제8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징수를 미룰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

문서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2. 납부할 변상금의 부과연도, 금액, 납부기한
3. 유예신청 사유와 기간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상금 징수에 대한 유예결정을 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할 변상금의 부과연도, 금액, 납부기한
2. 징수유예기간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66조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삭제</p> <p>③·④ (생략)</p>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 ----- ----- 제10조의3제4항----- ----- ----- -----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3. (생략)</p> <p>4. <u>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u></p> <p><신설></p> <p>5. (생략)</p> <p>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2. (생략)</p> <p>3. <u>대장가액 1억원 이하의 재산 취</u></p>	<p>제6조(심의회의 기능) ①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삭제></p> <p>5. <u>제23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②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u></p>

득·처분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신설>

(생략)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구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생략)

<신설>

--

제8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10억원 이상

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생략)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 (생략)

제21조(사용·수익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생략)

② (생략)

제21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23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구급고로 지정된 은행에 사용·수익을 허가

2. 공유재산의 다음 각 목의 취득·

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 면적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제20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용허가-----.

1. 2.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용허가) ① -----
사용허가-----
-----.

1. ~ 4. (현행과 같음)

5. 사용허가-----

6. 사용허가-----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하는 경우로 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구청장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가.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국제기구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3.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구급고로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 사용허가하는 경우

제22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

제22조(사용허가부의 비치) -----
----- 사
용허가부-----

-----.

제2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신설>

 ----- 사용허가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용허가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수행 실적 및 관리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전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7조-----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 3. ~ 6. (생략)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1. (생략)
-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 3. ~ 9. (생략)

제32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② (생략)
- ③ 삭제
-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

-----.

- 1. (현행과 같음)
- 2.-----

- 일반산업단지-----

- 3. ~ 6. (현행과 같음)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현행과 같음)
-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5항

- 3. ~ 9. (현행과 같음)

제32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④ -----

으로 하며, 건물 및 부지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면적

⑤ (생략)

제3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 <신설>

1. -----
사용허가 -----

2. -----
사용허가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13조의2제3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

사용허가-----

1. ~ 3. (현행과 같음)
- ②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행정재

<신 설>

산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③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구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다만,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영 제29조 제1항제20호,제25

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
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
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21조의2제1호에 따라 지역특
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
산·전시 및 판매를 위해 대부 또
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은 같
은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8
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
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
 항에 따른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
 부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 대부

제34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 사용허가-----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용허가-----

-----.

④ -----
----- 반환절차는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에 관한 규칙」-----.

제34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29조제1항 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또는 서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생산시설

제35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그 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 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해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39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국가

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② 영 제29조제1항제28호의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5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 사용허가-----

 -----.

제3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대부료-----

 -----.

④·⑤ (현행과 같음)

<삭 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
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
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
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
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
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
는 경우) (생략)

<신설>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
는 경우)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
과 같음)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내 기업을 서구로 이전하거나
설립하도록 유치하는 경우
-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
1항제4호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6항에 의한 “연구기관”을 유치
하는 경우

제50조(관사의 구분) -----
-----.

1. 1급 관사 : 부구청장 관사

2. 3. (생략)

<신설>

1. -- 관사 : 구청장 -----

2. 3. (현행과 같음)

제61조의2(변상금 징수의 유예) ①

영 제8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징수를 미룰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납부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 2. 납부할 변상금의 부과연도, 금액, 납부기한
- 3. 유예신청 사유와 기간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상금 징수에 대한 유예결정을 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납부할 변상금의 부과연도, 금액, 납부기한
- 2. 징수유예기간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관계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21. 4.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④ ~ ⑤ 생략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 ④ 생략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

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② ~ ③ 생략

제31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4. 20.>

- 1.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 2. 제1호 외의 재산: 1년

②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 2. 4.>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생략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21. 4. 20.>

③ ~ ④ 생략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7., 2021. 4. 20.>

- 1.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② ~ ③ 생략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92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의 제도개선 등 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활용, 공표 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2. 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⑥ 생략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4. 2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삭제 <2022. 4. 2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4. 7. 7.]

[제목개정 2022. 4. 20.]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7조의2에서 이동 <2022. 4. 20.>]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4. 7. 7., 2015. 7. 20., 2016. 7. 12., 2018. 1. 9., 2018. 12. 4., 2020. 12. 22., 2022. 4. 20.>

1. ~ 7. 생략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 17. 생략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 23. 생략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④ ~ ⑥ 생략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0. 3. 31.,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24.]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⑤ 생략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2., 2022. 2. 18., 2022. 4. 20.>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5. 7. 20., 2018. 12. 4., 2020. 12. 22.>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생략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 6. 21., 2015. 7. 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생략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4. 7. 7., 2015. 2. 16.,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18. 1. 9., 2018. 12. 4., 2019. 7. 2., 2020. 12. 22.>

1. ~ 11. 생략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 18. 생략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21. ~ 24. 생략

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제13조제3항 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26.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28. 그 밖에 일반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② ~ ⑧ 생략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생략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⑤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8. 4.,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24.]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대한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0. 3. 31.,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24.]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11. 11. 16., 2016. 7. 12., 2018. 12. 4., 2020. 12. 22., 2022. 2. 18.>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보아 계산한 대부료의 범위에서 감면한다. <신설 2022. 4. 20.>

[전문개정 2009. 4. 24.]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5., 2010. 6. 28., 2010. 8. 4., 2012. 4. 10., 2013. 3. 23., 2014. 7. 7., 2014. 11. 19., 2015. 2. 16.,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18. 1. 9., 2018. 9. 18.>

1. ~ 22. 생략

23.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4. ~ 33. 생략

② 생략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2014. 7. 7., 2016. 7. 12., 2017. 7. 26.>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3. 한꺼번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2.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 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⑤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45조(교환차금의 납부 등)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 ③ 일반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⑤ 일반재산 교환 시 소유권 이전은 교환차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교환차금이 완전히 납부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되, 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7.>

[전문개정 2009. 4. 24.]

[제목개정 2014. 7. 7.]

제52조의3(지식재산 사용허가등의 방법) ① 법 제43조의6제4항 전단에 따라 특정인에 대해서만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나 사용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별히 사용허가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6제4항 후단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일반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의6제1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제81조(변상금) ①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4. 7. 7., 2022. 4. 20.>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⑤ 삭제 <2022. 4. 20.>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한 경우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변상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신설 2022. 4. 20.>

[전문개정 2009. 4. 24.]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 생략

② 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된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금액을 조례로 정한다.

③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생략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582호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9.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2. 개정이유

유입되는 구민의 증가에 따라 행정적 수요가 증대됨. 이에, 정확한 행정적 처리를 위한 법리적 해석의 필요성 증가에 따른 법률고문 증원 및 다양한 분야의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분야별 소송고문 증원을 통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응소로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위촉) 조문에 따른 법률 및 소송고문 위촉 인원 증원.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064, 팩스 032-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유입되는 구민의 증가에 따라 행정적 수요가 증대됨. 이에, 정확한 행정적 처리를 위한 법리적 해석의 필요성 증가에 따른 법률고문 증원 및 다양한 분야의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분야별 소송고문 증원을 통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응소로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률고문 및 소송고문 위촉 인원을 증원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예산팀과 협의 예정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와 협의 예정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5명”을 “10명”으로, “3명”을 “6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위촉)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u>5명</u> 이내의 법률고문과 <u>3명</u> 이내의 소송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3조(위촉) ① ----- ----- ----- ----- <u>10명</u>-----<u>6명</u>----- -----.</p> <p>② (현행과 같음)</p>

의 건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 건	
4. 기 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 | |
|--------|--|
| 비
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597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최초):다락방지구 소공원, 시천1지구 소공원】결정 입안을 위한 열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최초):다락방지구 소공원, 시천1지구 소공원) 결정 입안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원개요

- 공 원 명 : 다락방지구 소공원, 시천1지구 소공원
- 공원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322-32번지 일원 외 1개소
- 면 적 : 다락방지구(1,358㎡), 시천1지구(336㎡)

2.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 입안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2022년 11월 26일 실효 예정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공원실효에 대응하며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3.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입안 총괄조서(붙임1~2)

4. 관계도서 : 게재 생략

- 시설결정 조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열람장소 및 구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

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 (☎032-560-4492)

붙임1) 총괄조서(다락방지구 소공원)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358.0	212.0	-	-	-	14	-		
공 원 시 설	소 계	212.0	212.0	-	-	-	14	-	
	기 반 시 설	소계	189.8	189.8	-	-	-	-	-
		도로	120.7	120.7	-	-	-	-	-
		광장	69.1	69.1	-	-	-	-	-
	조정시설	-	-	-	-	-	1	-	
	휴양시설	3.0	3.0	-	-	-	7	-	
	운동시설	19.2	19.2	-	-	-	3	-	
	관리시설	-	-	-	-	-	3	-	
녹지 및 기타	1,146.0	-	-	-	-	-	녹지율 : 84.39%		
시설율(% (법정 20%이하)	(212.0 ÷ 1,358.0) x 100 = 15.61%								
건폐율(% (법정 5%이하)	-								

붙임2) 총괄조서(시천1지구 소공원)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336.0	50.5	-	-	-	8	-		
공 원 시 설	소 계	50.5	50.5	-	-	-	8	-	
	기 반 시 설	소계	48.3	48.3	-	-	-	-	-
		도로	7.6	7.6	-	-	-	-	-
		광장	40.7	40.7	-	-	-	-	-
	조경시설	-	-	-	-	-	1	-	
	휴양시설	2.2	2.2	-	-	-	4	-	
	운동시설	-	-	-	-	-	2	-	
	관리시설	-	-	-	-	-	1	-	
	녹지 및 기타	285.5	-	-	-	-	-	녹지율 : 84.97%	
시설율(% (법정 20%이하)	(50.5 ÷ 336.0) x 100 = 15.03%								
건폐율(% (법정 5%이하)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601호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안)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 9.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정이유

○ 상위 법령과 위반되고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한 전대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대 금지 규정 삭제(안 제7조제4항)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2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560-4345, 팩스 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과 위반되고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한 전대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대 금지 규정 삭제(안 제7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양도 또는 전대(轉貸)할”을 “양도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③ (생략)</p> <p>④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 등을 다른 사람에게 <u>양도 또는 전대(轉貸)할 수 없고</u>,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양도할</u> ----- ----- ----- ----- ----- ----- -----</p>

관계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 ⑧ 생략